

10. 土地去來許可 · 申告區域 指定

資料提供 : 建設部

건설부는 백제문화권개발, 고속국도건설 및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라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5년의 기간으로 지정한 신고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신고구역으로 재지정하고 거래부진 및 지가안정으로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재지정에서 제외하였다.

-허가구역 추가지정내용을 살펴보면

건설부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지역과 고속국도 인터체인지건설 주변지역 및 아산공단등 대단위 개발사업 주변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2도 1시 9군 2,077.61km²)한 것으로

- 이중에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과 관련된 지역은 1시 2군 146.44km²이며

충남 공주시 검양동

공주군 이인면

부여군 부여읍 비녹지지역, 규암면

- 아산공단등 대단위 개발사업 관련지역은 2도 5군 1,538.79km²이고

충남 단양군 합덕읍 비녹지지역, 고대면, 대호지면, 정미면,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예산군 예산읍 비녹지지역, 삽교읍 비녹지지역, 신양면, 광시면, 대홍면, 응봉면, 덕산면(기규제구역 제외), 봉산면, 길덕면, 신암면, 오하면

홍성군 홍성읍 비녹지지역, 광천읍, 비녹지지역, 홍북면,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결성면, 서부면, 구항면

서산군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성연면, 음암면, 고북면

충북 진천군 덕산면, 백곡면, 이월면

- 고속국도 인터체인지건설 관련지역은 4군 392.38km²로 과거 기지정한 타고속국도의 경우와 같이 인터체인지 건설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지역에 한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충남	부여군	온산면, 홍산면
	공주군	탄천면, 우성면
	논산군	무읍 비녹지지역, 광석면, 성동면, 채운면
	서천군	시초면

또한 신고구역 재지정 및 제외내용을 살펴보면

- 이번 8.18일에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은 부산, 대구등 대도시 지역과 새만금간척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87. 8월과 '87. 12월에 지정된 21,953.67km²인 바
 - 이중 개발사업이 계속되어 투기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자치단체장도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에 대하여는 신고구역으로 재지정하고 (3직할시 6도 23구 56군 20,485.18km²)
 - 거래부진 및 지가안정으로 투기우려가 없다고 검토되고 자치단체장도 신고구역해제를 요청한 지역에 대하여는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재지정대상에서 제외함(2도 6군 1,468.49km²)

전북	진안군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정천면, 주천면		
	부안군	(허가구역인 동진면, 출포면 제외)		
경북	의성군	신평면, 안사면	영천군	화북면, 자양면
	영풍군	윤산면, 평은면, 문주면	청도군	각남면, 매전면

- 이번 허가구역 추가지정 및 신고구역 재지정은

- '92. 8월중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신고구역으로 8. 18 지정하게 되며
 -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92. 8. 19 ~ '95. 8. 18까지 3년간이고
 - 신고구역 지정기간은 '92. 8. 19 ~ '97. 8. 18까지 5년간이다.
- 이로써 허가구역은 전국토의 43.87%인 43,552.02km²에서 45.96%인 45,629.63km²로 증가하며 신고구역은 전국토의 39.08%인 38,797.13km²에서 37.60%인 37,328.64km²로 축소된다.